

# 수출현안 · 수입제도 모니터링(수시) 양식

2018년 9월 10일 / 방콕사무소

구 분(택1)	핵심내용
(통관/검역/라벨링/기타)	<input type="checkbox"/> 태국 영유아 식품 정보 라벨링 규정

주요내용 및 시사점 · 대처방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<b>주요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태국 보건부(Ministry of Public Health)는 영유아식품이 연령에 따른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과장된 마케팅 촉진을 방지하기 위해 “2018년 영유아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방식 및 정보 처리 내용과 규정 절차 조건”을 공지하였으며, 이 공지는 2018년 6월부터 시행되어짐</li> <li>○ 본 공고는 영유아 식품의 마케팅 광고와 마케팅 프로모션에 대한 규칙, 절차, 조건 및 세부 사항을 설정하여 부적절한 마케팅 촉진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</li> <li>○ 주요 내용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영유아 식품 수입, 판매, 생산 및 제조업자는 식품의 정보를 표기 할 때 유아용 식품 사용량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 하여야 함</li> <li>- 라벨링 표기에 포장 단위별 용량을 월단위로 표시하고 출생~생후 3개월, 생후 3개월~6개월, 생후 6개월 이상으로 나누어 식품 라벨에 표기해야 함</li> <li>- 식품 정보에 영유아 식품에 대한 최소한의 주의사항도 함께 표기해야함</li> </ul> </li> <li>○ 관보 공지를 시점으로 30일 후에 시행</li> </ul>
<p><input type="checkbox"/> <b>시사점 및 대처방안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재 한국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분유의 라벨링은 조유량 및 사용법 대한 표기만 있어 수출업자들은 이에 유의하여 본 공지에 맞는 라벨링 표기를 준비해야 할 것임</li> </ul>
<p><input type="checkbox"/> <b>발표일자/출처</b> : 2018년 3월 30일 / 태국 보건부</p>

## 관보 공지 เล่ม ๑๓๕ ตอนพิเศษ ๑๐๒ ง, 2018년

영유아 식품에 대한 정보 제14조에 의거 마케팅 광고와 제 18조에 의거 마케팅 프로모션의 경우 식품에 대한 적절한 규칙, 절차, 조건 및 세부 사항을 설정하여 부적절한 마케팅 촉진을 방지한다.

2017년 영유아 식품 마케팅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, 제16조 2항 및 3항에 의거 마케팅 규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건부 장관이 아래와 같이 공지한다.

1. 이 공지는 “2018년 영유아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방식 및 정보 처리 내용과 규정 절차 조건”이라고 한다.
2. 이 규정을 관보공지를 시점으로 30일 후에 시행된다.
3. 영유아 식품 수입, 판매, 생산 및 제조업자는 식품의 정보가 아래와 같이 유아용 식품 사용량과 비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.
  - 3.1. 영유아 식품은 포장단위별 용량을 월단위로 표시하고 모유를 먹지 않고 영유아 식품만 먹을 경우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분류한다.
    - 3.1.1. 출생 ~ 생후 3개월까지
$$\text{포장 단위(통, 박스 등)} = 2.7\text{kg/월} \div \text{포장 단위별 용량(kg)}$$
$$= \text{포장 단위 수량/월}$$
    - 3.1.2. 생후 3개월 ~ 6개월
$$\text{포장 단위(통, 박스 등)} = 4.5\text{kg/월} \div \text{포장 단위별 용량(kg)}$$
$$= \text{포장 단위 수량/월}$$
  - 3.2. 아기가 모유를 먹지 않고 영유아 식품만 먹을 경우 한 달 평균 비용 계산을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.

\* 예상 비용 (바트/월) = 포장단위수량/월 × 식품가격(통, 박스 등)
4. 영유아 식품 수입, 판매, 생산 및 제조업자는 식품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.
  - 4.1. 출생 ~ 생후 3개월 아기에게 분유만 먹이는 경우 평균 2.7kg/월이 필요하고, 포장 단위별 용량(중량) ...kg/1통과 ...통/월이 필요하며 이를 ...바트/월로 표기한다.
  - 4.2. 생후 3개월 ~ 6개월 아기에게 분유만 먹이는 경우 평균 4.5kg/월이 필요하고, 포장 단위별 용량(중량) ...kg/1통과 ...통/월이 필요하며 이를 ...바트/월로 표기한다.
  - 4.3. 생후 6개월 이상 된 아기는 모유수유와 개월 수에 따른 음식을 병행하여 먹이면 좋고 분유를 먹여야 할 경우 비용과 건강 문제에 대해 항상 대비해야 한다.

출생 ~ 생후 6개월 영유아 식품 라벨에 4.1., 4.2. 그리고 4.3.의 내용을 필수로 표기해야 된다. 4.3.은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 식품 라벨에 표기해야 된다.
5. 영유아 식품 수입, 판매, 생산 및 제조업자는 식품정보에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주의사항을 표기해야한다.
  - 5.1. 아기의 안전을 위해 식품 준비 및 보관에 주의하여야 한다.

- 5.2. 젓병 및 젓꼭지를 사용하기 전에 끓는 물에 5분쯤 삶거나 젓병 소독기를 소독해야 한다.
- 5.3. 분유는 물을 끓이고 적정 온도로 식혀야 한다.
- 5.4. 아기가 먹는 적정 양을 준비하고 남은 것을 나중에 다시 아이에게 주는 것은 좋지 않다.
6. 위 4. 5.번 조항은 한눈에 보기 쉬운 위치에 표기하고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.
7. 영유아 식품 수입, 판매, 생산 및 제조업자는 영유아 식품 유통 판매점에서만 판매 가능하다.
8. 위 7번 조항의 판매점을 제외하고 임산부 및 소비자가 식품 수입, 판매, 생산 및 제조업자에게 식품에 대한 문의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내의 정보를 알려 줄 수 있다.
  - 8.1. 질문에 대한 정보만 질문자에게 직접 정보를 준다.
  - 8.2. 질문자가 식품 수입, 판매, 생산 및 제조업자에게 다시 연락할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.
  - 8.3. 질문자에게 정보를 주면서 영유아 식품 광고나 판촉을 할 수 없다.

보건부 공지일 2018년 3월 30일  
Mr. Piyasakol Sakolsatayatorn  
보건부 장관

관보 공지일 2018년 5월 4일